

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에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4. 7. 6.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6. 20.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4. 6. 22.

다. 상정 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7. 6)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감사실장 김진택)

가. 제출이유

-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에 흡수,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중복성 및 행정적 낭비를 배제하고 일관성있는 민원심의 제도를 확립키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기능중 분쟁의 조정·알선 기능 추가(안, 제2조 제3호)
- 민원발생 관할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3조 제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제4조)
-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전재)

○ 동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

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에 흡수, 통합 운영하여 행정에 대한 공신력 제고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됨.

- 문민정부 출범이후 행정쇄신 차원에서 정부기구의 조정축소 및 제도개선, 각종법령에 의한 규제완화 시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행정여건의 변화 추세에 따라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설치도록 된 위원회 외 일부자문기구는 그 효율성과 적합성등을 재검토하여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채운석 위원): 현재는 마포구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의 2개 위원회가 모두 있는가?
- 답변(김진택 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복성과 행정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 통합코자하며, 건축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이 해당됩니다.

5. 토론 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 조례(안)

의 안	306
번 호	

제출년월일 : 1994. 6. 2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마포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에 흡수,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중복성 및 행정적 낭비를 배제하고, 일관성 있는 민원심의 제도를 확립키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위원회 기능중 분쟁의 조정·알선기능 추가(안, 제2조 제3호)
- 민원발생 관할 등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3조 제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제4조)
-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항)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15조
-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1992. 1. 14. 조례 제2863호)

4. 개정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쟁의 조정·알선

제3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원발생 관할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등)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5인의 위원"을 "6인 내지 7

인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3조 제3항 제4항"을 "제3조 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위원 3인"을 "위원 4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6조 제2항"을 "제3조 제4항, 제5항 및 제6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마포구"를 "구"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마포구"를 "구"로 각각 한다.

제11조 중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1990. 11. 1조례 제127호)는 이를 폐지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규정(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민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신설) 3.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p>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분쟁의 조정·알선 4.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내지③(생략) (신설)</p>	<p>제3조(구성) ①내지③ (현행과 같음)</p>
<p>④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④민원발생 관할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p>
<p>제6조(회의의 구성) ①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p>	<p>제6조(회의의 구성) ①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6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p>
<p>제7조(회의의 소집등) ①(생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마포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p>	<p>제7조(회의의 소집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 제4항, 제5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간사) ①(생략)</p> <p>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u>조사계장</u>이 된다.</p>	<p>제9조(간사) 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u>민원관리계장</u>이 된다.</p>
<p>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u>마포구</u> 소속국장 또는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u>마포구</u>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p>	<p>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u>구</u> 소속국장 또는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u>구</u>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u>공무원</u>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u>구 소속 공무원</u>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4. 7. 6.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6. 28.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4. 6. 30.

다. 상정 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7. 6)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1과장 문 염승)

가. 제출이유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남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각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키고, 남세의무자의 중복신고 의무사항을 생략하고, 과세권자의 직권미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남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남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의 발급사무를 각동장에게 위임.(안, 제6조의2)
-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남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안, 제15조,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취득세 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남세의무자의 불편해소(안,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